KOSHA GUIDE

C - 25 - 2018

부위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.

- (라) "수리"라 함은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교정, 손상부의 재용접, 재도장, 재도금, 부품의 교환 등 행위를 말한다. 단,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.
- (마) "모집단"이라 함은 동일한 종류와 형식으로 부재별 관리기준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 기자재"로 분류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전체를 말한다.
- (바) "현저함"이라 함은 판정기준상 부식, 변형 등으로 인한 두께의 감소, 정비 불가능, 정비가 되어도 사용상 무리가 따르는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.
- (사) "NDT(Nondesructive Testing, 비파괴검사)는 검사 대상물을 파괴 또는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품질 또는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 본 지침에서는 비파괴검사 중 액체침투탐상검사(Liquid Penetrant Test; PT)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(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)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폐기기준

재사용 하고자 하는 가설기자재는 변형·손상·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불가능한 가설기자재와 고용노동부고시 "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", "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"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는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. 폐기기준은 [부록 1]과 같다.

- (1) 재사용 : 수리 또는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성능기준이 확보된 경우
- (2) 폐기 :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변형·손상·부식 등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